

# 하나 체크카드 기업회원 약관

시행일 : 2021. 5. 10

## 제 1 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하나카드와 제휴한 금융기관에 결제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이라 함)에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 하나비씨체크카드 포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지정카드 (계좌지정기업카드 포함. 이하 '사용자지정카드'라 함)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 (이하 '공용카드'라 함. 법인명의카드 포함)
  2. 회원이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이하 '사용자지정카드'라 함. 임직원명의카드 포함)
  3. 사용자지정카드 중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사용자 명의로 지정한 카드 (이하 '계좌지정기업카드'라 함.)
- ④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회원은 카드사용자가 퇴사할 경우 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카드의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통하여 카드사용 관리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 제2조(연회비 등)

카드사는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이용 당시 결제계좌의 예금잔액범위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부정사용 방지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체크카드의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용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은행 또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계좌이체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범위 내로 합니다.

## 제 4 조 (카드의 이용)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 칩 비밀번호(이하 'PIN 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카드이용의 제한)

① 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입력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또는 구매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지급제한 계좌
5.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약정 인출가능금액 포함) 부족 또는 확인 불가능한 경우
6.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7. 기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 제 6 조 (대금결제)

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의 결제계좌에서 거래 즉시 인출됩니다. 단,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이용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Holding)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날에 출금하여 결제하며, 지급정지는 출금과 동시에 해제됩니다. 단, 처리일자의 차이로 인하여 지급정지금액과 인출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1 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연체이자 산정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③ 해외(해외 ATM 기 포함)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 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에 총당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 3 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x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 x 전신환매도율

⑤ 제 2 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 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제 7 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취소)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카드사는 해당 취소 거래 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환급)합니다. 단, 가맹점으로부터 취소거래가 취소일자와 다른 날 접수된 경우 등에는 취소 거래 접수일에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카드대금 환급이 제 1 항에서 정한 영업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질 경우,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 8 조 (현금카드기능 부여)

① 사용자지정카드 등 일부 카드에 한하여, 카드사와 제휴한 은행 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현금카드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카드로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카드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제 4 조 제 2 항의 회원 등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ATM 에서 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7호부터 제9호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 등에게 알려드립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 한 경우
2.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회원이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6. 회원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8.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9.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제2항, 제3항의 사유로 체크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립니다.

#### **제 10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1 조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 부정사용금

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3 항제 7 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 1 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 2 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7.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③ 회원은 제 2 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 제 14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부속약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15 조 (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카드사가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카드사가 결제방법, 대금결제일 등을 변경할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16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17 조 (유보사항 및 경과 조치)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 약관에 따라 개인형기업카드(구 외환 법인개별카드, 구 하나비씨 개인형기업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유효기한까지는 종전 약관 중 개인형기업카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